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97

발의연월일: 2024. 8. 26.

발 의 자: 박용갑・박정현・황 희

한민수 · 조승래 · 장종태

조인철 · 정준호 · 전용기

문진석 • 허 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수 있도록 「보험업법」(법률 제19780호, 2024. 10. 25. 시행)이 개정됨.

그런데 개정 「보험업법」의 내용은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,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은 실손공제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제조합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

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계약자, 피공제자,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(안 제58조의2 신설).
- 나. 공제조합은 실손의료공제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).
- 다.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·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안 제58조의3제4항 및 제96조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) ① 실손의료공제(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계약의 공제계약자, 피공제자,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(이하 "요양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・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 및 「약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,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3(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・

- 운영 등) ① 공제조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·보안성·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・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업무위탁의 범위·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8조의2(실손의료공제계약의
	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
	송) ① 실손의료공제(실제로 부
	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
	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. 이하
	같다) 계약의 공제계약자, 피공
	제자, 공제수익자 또는 그 대리
	인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하
	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
	에 따른 요양기관(이하 "요양
	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
	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
	세부산정내역 등 공제금 청구
	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
	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
	류를 공제계약자가 실손의료공
	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에
	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
	을 요청할 수 있다.
	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
	기관은 「의료법」 제21조 및
	「약사법」 제30조에도 불구하
	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

<신 설>

-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 청 방법과 절차,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
- 제58조의3(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의 구축·운영 등) ① 공제조 합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 여야 한다.
 -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·보안성·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보험업법」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

제9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6조(벌칙) 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7. (생략) <신 설>

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 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 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 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 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산시스템의 구축・운영, 업무위 탁의 범위 ·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-----.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 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 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